

인신 매매 대 인신 밀수

인신 매매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인신 매매는 폭력, 사기 또는 강압으로 상업적 성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강요받은 사람이 18세가 채 안된 경우이다; 또는
- 강제 노동, 노역, 채무 노예, 또는 노예로 부려 먹기 위해 폭력이나 사기 또는 강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 은신, 운반, 지원 또는 인수 행위.

인신 밀수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여 사람들을 미국내로 밀입국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외국인들을 미국내로 밀반입하는 행위는 물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불법 운송 및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두 개 용어는 교체 사용할 수 없다.

- **인신 밀수**는 운송 개념
- **인신 매매**는 노동 착취 개념

수상한 활동 보고:

1-866-DHS-2-ICE (1-866-347-2423)
www.dhs.gov/bluecampaign

인신매매 징조

-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여행서류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그런 서류를 갖고 있는가?
- 피해자는 사법기관과 이민국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미리 지시를 받았는가?
- 피해자는 밀입국 수수료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급여에서 돈을 떼이고 있는가? (밀입국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인신매매로 간주되지 않음.)
- 피해자는 성행위 강요를 받았는가?
- 피해자는 이동의 자유가 있는가?
- 피해자나 그의 가족은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는가?
- 피해자는 추방이나 구속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는가?
- 피해자는 구타를 당했거나 음식, 물, 수면, 의료 또는 기타 생활 필수품을 박탈 당했는가?
- 피해자는 친구나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가?
- 피해자는 상업적 성행위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인가?
-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말을 주고 받거나 종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수상한 활동 보고: **1-866-DHS-2-ICE** (1-866-347-2423)

www.dhs.gov/bluecampaign

BC-IC1-KOR 07/14